



보건복지부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진료 급여여부 질의 회신

1. 관련 : 대한의사협회 제171-526호(2021.4.15.)

2. 대한의사협회에서 질의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등에 따른 환자의 진료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, 위탁의료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-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진료하는 경우, 이미 발생한 질병·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**요양급여 대상임**. 진찰료 및 동반된 행위·약제·치료재료는 개별 항목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산정 가능함

* 예방접종 후유증 또는 합병증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하여야 한다는 행정해석례(급여1492-3109호, '83.3.4.)가 존재하며, 전신반응(아나필락시스, 길랑-바레 증후군 등) 관련 진료를 현재도 급여 인정

- 다만,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(시행비)에는 예방접종 관련 진찰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, (가) 백신 접종 후 대기시간에 발생한 이상반응과 (나) 접종당일 재내원한 경우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음

※ 코로나19 예방접종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방안 (21년도 제2차 개정심, '21.1.29.)
- 예방접종을 위한 **예비진찰**, 백신 접종, 백신 취급 및 보관, **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** 등을 포함한 '코로나19 예방접종비' 한시적 적용 (1회 19,220원)

- (다) 접종일 이후 내원한 경우는 진찰료를 포함한 행위·약제·치료재료를 급여 대상으로 산정 가능함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,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보건사무관 **조영대** 보험급여과장 **이중규** 전결 2021. 4. 21.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2141 (2021. 4. 21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/ <http://www.mohw.go.kr>
보험급여과

전화번호 044-202-2733 팩스번호 044-202-3934 / iamyd84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